

서울특별시 보도상영업시설물 관리 등에 관한 조례
일부개정조례안

심 사 보 고

의 안 번 호	1693
------------	------

2020년 9월 8일
교 통 위 원 회

1. 심사경과

가. 제안자 : 서윤기 의원 외 42명

나. 제안일자 : 2020년 7월 13일

다. 회부일자 : 2020년 7월 14일

라. 상정일자

- 제296회 임시회 폐회중 제3차 교통위원회(2020년 9월 8일 상정·의결)

2. 제안설명의 요지(제안설명자 : 서윤기 의원)

가. 제안사유

- 「서울특별시 인권 기본 조례」 제8조에 따른 인권영향평가 결과와 서울특별시 인권위원회의 자치법규 개선 권고 사항을 조례에 반영함으로써 시민의 인권을 보호하고 증진시키고자 함

나. 주요내용

- ‘유모차’를 ‘유아차’로 함(안 제2조제5호)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해당 없음

나. 예산조치 : 해당 없음(비용추계 비대상사유서 별첨)

다. 입법예고

- 기 간 : 2020.7.17.~2020.7.24.
- 의견없음

라. 관련부서 의견조회 결과 : 원안가결¹⁾

- 「서울특별시 인권 기본 조례」 제8조에 따라 인권영향평가 결과, 유모차는 ‘母’자만 들어가 평등육아 개념에 반하고, 차별적 용어 사용으

1) 보 행정 책과-11272(2020.8.21.)

로 인권침해의 요지가 있다는 서울특별시 인권위원회의 자치법규 개선 권고사항으로 제2조제5호의 '유모차'를 '유아차'로 개정하는 것으로, 이는 서울특별시 순화대상 언어로 기 선정된 바 있어 이견 없음

4. 검토보고 요지(수석전문위원 장훈)

가. 개요

- 동 개정조례안은 서울시 인권위원회가 실시한 인권영향평가²⁾ 결과에 따라 인권위원회가 권고한 자치법규 개정사항 등을 반영하여 차별적 용어를 정비하는 것으로 현행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‘유모차’를 ‘유아차’로 개정하고자 하는 것임

나. 검토의견

■ 조례 개정 배경 등

- 서울시 인권위원회는 2019년 서울시 자치법규에 대한 인권영향평가(2019년 7월 1일 기준 860개)를 실시하여 인권영역별로 서울시민의 인권을 침해하거나 침해할 우려가 있는 조항을 전수조사한 바 있음
- 각 자치법규에 대한 전수조사 점검표는 ‘차별 및 인권 침해 예방’, ‘기본권보장 및 권리의 구제’, ‘시민참여 보장’ 등 3개 분야에 대해 9개 평가항목으로 세분화였고, 동 점검표에 따라 평가를 수행하였음

2) 「서울특별시 인권 기본 조례」 제8조(인권영향평가)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인권영향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.

※ 참고 : 자치법규 전수조사 점검 기준

평가분야	평가항목
차별 및 인권침해 예방	1) 차별적 용어사용으로 인한 인권침해
	2) 편견이나 선입견에 근거한 대상 한정에 따른 차별
기본권 보장 및 권리의 구제	3) 입장 및 이용 제한 조항에 따른 문화권 제약
	4) 장애인의 문화권 제약
	5) 반환권 제약(공공시설 이용 시 반환조항 미비)
	6) 구제권 제약(과태료 부과징수 법적 근거, 구제절차)
시민참여 보장	7) 개인정보보호권 보장
	8) 기본계획 수립 시 시민참여권 및 알권리 보장 여부
	9) 시민의 공직활동 참여권 보장 및 위촉 해제 관련 차별적 조항

- 그 결과 869개 자치법규 중 62개 자치법규, 96개 조항에서 개정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 되었고 이에 서울시 인권위원회³⁾는 지난 4월 인권영향평가 기준에 맞지 않는 62개 자치법규의 개정을 권고⁴⁾하였음

■ 차별적 용어 정비(안 제2조)

- 현행 조례 제2조제5호⁵⁾에서는 보도를 연석선, 안전표지 등 비슷한 공작물로써 경계를 표기하여 유모차 등을 포함하는 보행자의 통행에 사용되는 도로의 부분으로 정의하고 있음

3) 「서울특별시 인권 기본 조례」 제14조(설치) ① 시민의 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주요 시책에 대한 심의·자문을 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인권위원회(이하 "인권위원회"라 한다)를 설치한다. ② 인권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. 3. 시민의 인권에 영향을 미치는 법규, 정책에 대한 자문

4) '서울특별시 인권위원회 권고 알림 및 이행요청' 인권담당관(2020. 4. 6.)

5) 「서울특별시 보도상영업시설물 관리 등에 관한 조례」 제2조(정의) 5. "보도"란 연석선(차도와 보도를 구분하는 돌 등으로 이어진 선을 말한다. 이하 같다), 안전표지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공작물로써 그 경계를 표시하여 보행자(유모차 및 보행보조용 의자차를 포함한다)의 통행에 사용하도록 된 도로의 부분을 말한다.

- 동 개정안은 위 조문 중 ‘유모차’라는 단어를 ‘유아차’로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유모차에는 ‘母’자만 들어가 있다는 점에서 2018년 서울시여성가족재단에서 평등육아에 위배되는 개념으로 선정한 바 있으며, 육아의 주체는 여성만이 아닌 남성도 포함하는 것인 만큼 ‘유모차’를 ‘유아차’로 개정하는 것은 평등육아의 실현 차원에서 이해된다고 할 것임

- 동 개정조례안을 통해 평등육아의 인식을 향상시키고 아동 중심적 관점에서 용어를 개선하는 것은 충분히 인정된 다고 할 것이나 상위법⁶⁾에서는 유모차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는 만큼 법령 개정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 형성도 필요하다고 할 것임

6) 「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」 제2조(정의)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

1. "보행자길"이란 보행자(유모차 및 행정안전부와 국토교통부의 공동부령으로 정하는 보행보조용 의자차를 포함한다. 이하 같다)의 통행을 위한 장소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.

5. 질의 및 답변요지 : 없음

6. 토론요지 : 없음

7. 심사결과 : 원안가결

8. 소수의견 요지 : 없음

9. 기타 필요한 사항 : 없음

서울특별시조례 제 호

서울특별시 보도상영업시설물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 보도상영업시설물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제5호 중 “유모차”를 “유아차”로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2조(정의) (생략)</p> <p>1~4. (생략)</p> <p>5. "보도"란 연석선(차도와 보도를 구분하는 돌 등으로 이어진 선을 말한다. 이하 같다), 안전표지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공작물로써 그 경계를 표시하여 보행자(<u>유모차</u> 및 보행보조용 의자차를 포함한다)의 통행에 사용하도록 된 도로의 부분을 말한다.</p> <p>6~7. (생략)</p>	<p>제2조(정의) (현행과 같음)</p> <p>1~4. (현행과 같음)</p> <p>5.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<u>유아차</u>----- ----- ----- -----.</p> <p>6~7. (현행과 같음)</p>